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8. 29. / (총 13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전 화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인 확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부산광역시	팀 장	이 종 모		051-888-5073	
종무팀	담 당 자	김 종 문		051-888-507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044-202-1720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이 성 경		044-202-17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자체 코로나19 조치사항,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보고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 지자체 코로나19 조치사항,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보고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내일(8.30.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조치가 추가되어 **카페·음식점·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염려가 많을 것이나, 더 큰 희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말에 교회예배 등 종교모임은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생필품 구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강조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음식점·제과점·카페, 골프연습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 10인 이상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집합금지조치)' 실시 또는 '고발'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 2학기 개강을 맞아 '교육부-서울시-자치구-대학'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10인 이상이 함께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하는 등 유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8월 20일(목)부터 26일(수)까지 1차 의료기관(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을 방문한 사람 중 호흡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천시민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8월 30일(일)부터 관내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미사·법회 등을 해야 하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
- * 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8월 19일(수)부터 이미 실시
- 경기도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가 내려진 8월 31일(월)부터 9월 6일(일)까지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3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 다만,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업 등으로 재택근무 실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차출퇴근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는 종교시설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간담회 실시(8.18.), 안내 공문 발송(8.19.) 등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방역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지난 8월 21일(금)부터는 교회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실시토록 하였으며,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소모임·식사제공· 수련회 등의 대면모임을 금지하였다.
 - 이에 따라 8월 23일(일)에는 교회 1,76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장예배를 실시한 279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106개소)이나 경고조치(173개소)하였다.
 - 부산시는 비대면 예배에 참여토록 교회단체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합동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2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 □ 내일(8.30.) 0시부터 9월 6일(일) 자정까지 **8일간** 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와 동시에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오직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 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된다.
 - 이들 음식점에서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따라서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책임자

-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이용자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마스크 착용
 -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한다.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21시부터 익일 05시 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제과점에서 음료를 함께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실내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 시설(법제3조, 시행령제2조별표1)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여기에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 □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은 학원법 제2조의2의 학원 종류에 따른 '수도권의 모든 학원'이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 이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1/3 이상에 대해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 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
- □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강조했다.
-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집합금지 조치 또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3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8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191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893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2986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8.2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5명**을 적발하여, 이 중 **4명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8월 28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홍시설 7,465개소, ▲교 회 782개소, ▲학원 1,530개소 등 39개 분야 총 2만 6208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3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46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43반, 1,346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 (行)·3금(禁) 수칙 포스터
 -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8.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및 교습소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민간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웨터 파크, 종교사설, 실배 결혼장 공연장 영화라 목욕탕시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 0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 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이상), 뷔페, PC방 O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 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피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학교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〇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기업	민간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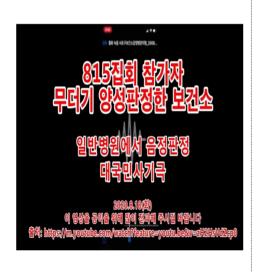
붙임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u>7시</u>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화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에 관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